

중조방극간 국경철도묘방유지 사업에 관한 임시 의정서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방극철도는 방극간의 압북장 2개묘방 무안장 1개 묘방의 보수 및 대수리사업을 각각 나누어 책임짐으로써 묘방의 장구적인 방호한 상태와 철도운수의 끊임없는 안전한 운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다음과같이 협의한다

7 묘방의 유지사업

제1조 묘방 유지사업의 분계선

1. 압북역과 신의주역간의 압북장 묘방의 구묘 가—다 공간은 전부합하여 13칸인바 중국측으로부터 세어 여섯번째 묘각 즉 조선측으로부터 세어 역시 여섯번째 묘각의 중심에서 나누어 중조쌍방은 각각 가—다 공간 6칸씩을 관리한다
2. 잠안역과 안포역간의 압북장 묘방의 가—다 공간은 전부합하여 구묘 가—다 8칸 판묘 가—다 17칸인바 중국측으로부터 세어 11번째 묘각 즉 조선측으로부터 세어 9번째 묘각의 중심에서 나누어 중국측은 판묘 가—다 공간 11칸을 관리하며 조선측은 구묘 가—다 8칸 판묘가—다 6칸을 관리한다
3. 도문역과 남양역간의 무안장 묘방의 판묘가—다 공간은 전부합하여 21칸인바 중국측으로부터 세어 11번째 묘각 즉 조선측으로부터 세어 10번째 묘각의 중심에서 나누어 중국측은 가—다 11칸을 관리하며 조선측은 가—다 10칸을 관리한다
이상 3개묘방의 유지사업의 분계선요르하는 묘각은 그의 보수

대수리사업을 전리롭게하기위하여 전부 중국측 철도가 이를 책임지고 유지한다

제2조 이상 3개철도 표방의 유지사업은 1954년7월31일전에 인계인수를 끝마치고 양국철도는 1954년8월1일부터 각각 이를관리한다
인계인수사업은 쌍방 국경철도관리국으로부터 각각 관계인원을 파견하여 연합위원회를 조직하고 연합위원회가 이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조선측이 인계할어 유지발표방은 중국측이 전체 기술상태에 근거한 인계초서를 작성하여 쌍방대표가 추진한두 양국철도 중앙기관에 각각 보고하여 비치한다

제3조 각개 표방을 인계인수한두 유지사업은 각각 본국철도에서 시달한 규정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4조 표방 및 선로 상부구조의 유지사업을 집행하는시에 선로차단 혹은 열차 운전속도를 일시제한해야할 경우에는 반드시 요구측의 보선구장은 먼저 상부의 승인을받은후 국경역장을 통하여 상대방 국경역장에게 제출한다

제5조 홍수 류빙 및 기타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이노원망의 표방이 열차운전에 위험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원망 공무부분으로부터 본국 국경역을 통하여 상대측에 열차운전정지를 제기하여 열차운전에 있어서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쌍방은 각각 자기측 주관 상부에 재해정형을 보고한다
원망은 상대측 요구에 근거하여 즉시 필요한 복구 자재를 유

대한 인원을 파견하여 협조하여 급속히 복구한다
표방을 복구한후 협조한측의 보선구장은 그 복구협조에서 소모된 공구 자재 및 소요된 교통력에 관한 서류 3부를 작성하여 요구한측 보선구장이 서명한후 쌍방은 각각 1부의 가진다 그 후 협조측 보선구장은 자기측 주관부문에 이를 보고하여 결산서 3부를 작성하여 상대측에 청구하여 청산 처리한다

제6조 별차운전의 중단 사고처리 구원절차 및 방법이 사고 소일에 대한 책임은 모다 1954년4월1일부터 실시한 중추국경철도 협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7조 각표방의 별차운전 허용속도의 용원을 보장하기위하여 어느일방에서나 단독적으로 속도의 제고 또는 저하를 결정할수없다 현행 운전속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경우에는 반드시 표방 결정 혹은 필요한 검사를 거친후 일방 국경철도관리국으로부터 속도변경 근거를 제출하여 상대방 국경철도관리국장의 동의를 얻은후에 변경할수있다

1. 표방의 1954년 기본건설 및 대수리공사

제8조 1954년도 중추국경 3개표방의 대수리 및 기본건설 복구공사에 있어서 그 계획 설계 시공은 모다 중추철도가 이를 책임지며 금년내도 완성한다

제9조 1954년도 대수리와 기본건설복구공사의 중요공정항목과 그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1. 안동 신의주간의 표방—1개표각수리 표방도토 8000 T 표방의

복제관간신설 945M 합 대수리비14.9억원

2. 잠안 안포간 표방-5개표각수리 표대 표각 복구 각각1개 구
표가-다 8칸 판표가-다 1칸의복구 판표가-다 1칸의 신조
표면수리190M 표방도로742T 및 표방인도관간190M 합
기본건설비 56억원

3. 도문 남양간 표방-표방도로452T 표면표판218.5M 표대
기간보호440M³ 방수세방석재985M³ 합 대수리비9.8억원

이상에 레거한 공사계산합계 인민폐80.2억원임

이상공사비용은 준공후 설치지출된 종금액에 의하여 중조항국이
평균부담한다

초선속이 부담할비용은 먼저 중국정부에서 대리지불하고 공사가
준공되어 검사인수후후 중국측은 공사결산에 근거하여 초선속과
결산하되 이를 1955년도 중국이 초선을 원조하는 원조비에
포함시킨다

제10조 이상 각공사가 전부 준공된후 중국측은 초선속에 통지하여
검사위원을 도의결정하고 쌍방은 관계인원을 파견하여 검사인계
인수위원회를 조직하고 기본건설 및 대수리공사가 끝난 표방을
검사 인계인수한다

제11조 검수에는 설계문건 중국철도부 표방수도대수기술검수표준(초안)
및 기본건설공정삼행 검수표준에 근거하며 검수에 합격한후에는
즉시 검수보고를 작성하여 각각 당국철도 중앙기관에 보고하여
비치한다

제18조 상항의 표방선토의 기본건설 대수리공사를 진행하기위한 수리 및 건설 노동자 기술인원 및 공사지도원순들은 반드시 자기속 국경철도관리국장이 발급한 본인의 사진이 첨부된 구간통행 표방수리공사증발 가져야하며 검사기관에서는 그 공사증에 의하여 통행시킨다

본증명서의 양식은 발행한 철도관리국으로부터 관제국경역의 국경검사기관에 1부 보내어 비치케한다

기타 일간표방유지 선토유지 인원이 국경을 통과할시는 승조국 경철도 업무부속 제1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ㄷ 양국간의 임시표방 임시선토

제18조 삼안 안포간 임시표방 임시선토는 본 표방발 수리복구한후 철거하며 안동 심의주간의 임시표방 임시선토도 역시 복구한후 철거한다

철거후 임시표방 하부구조물 및 임시선토 토단은 양국철도에서 각각 책임지고 보관한다

이상의 각 임시표방 임시선토의 건축자재는 철거한후 중국측 이 보관한다

제14조 본 의정서는 1954년 6월 7일 북경에서 서명하며 합2부를 작성하여 상대방에서 각각 1부씩 가지고 매부는 중국문화 조선문으로 작성하되 항중문자의 조문들은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제15조 본 의정서는 서명한날부터 1개월을 경과한후 효력을발생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철도부 대표 糜 鏞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통성

대표

